

협회기사

▲ 제 3 회 정기(이)사회 (1970. 1. 28 본회 회의실)

出席 강명구 회장, 강봉진, 김동규, 이봉로, 한창진 (이사) 서울시 지부장

討議事項

1. 건축사법 개정안 제출의 건
결의 - 차기 이사회에서 결의하기로 함.
2. 담당이사 채택의 건
3. 건축사 업무 연구위원회 예산 승인의 건
결의 - 건축사 업무 연구위원회를 두되 예산은 연구비 항목에서 지출하기로 함.
4. 결의 과 위원회 예산초과에 대한 조치
결의 - 각 분과위원장이 선임보고된 위원 중에 서 인원조절은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결 의.
5. 직원 보완문제
결의 - 직원 채용은 회장과 총무이사가 선임하 기로 결의 함.

▲ 제 4 회 정기(이)사회 (1970. 2. 9 본회 회의실)

出席 강명구 회장, 김동규, 이봉로, 한창진(이사) 서 울시 지부장

討議事項

1. 건설부 전말에 대한 결과보고의 건
결의 - 서울 지부에서 보고된 내용을 수정하여 우선 건설부에 보고하고, 건의서 내용 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원고를 작성하도 록 함.
2. EXPO 70 관람자 결정의 건
결의 - 우선 희망자에 따라 결정하되 각지부에 전통으로 통지하여 추천하도록 할것.
3. 건축사법 개정안 제출의 건
결의 - 건축사 업무 연구 위원회에서 심의된 개정안을 유인물로 작성하여 우선 이사 회에 제출할 것.
4. 회원명부 인쇄
결의 - 우선 견적서를 받고 광고청탁 2 개업체 를 추천 2 월중에 인쇄하도록 함.
5. 강봉진 이사 총무이사직 사퇴
결의 - 사퇴를 수락하고 김동규 이사를 총무이 사로 만장일치 결의 함. 차후 직인은 총무이사가 보관하고 회장 싸인후 날인 함.

▲ 제 5 회 임시 (이)사회 (1970. 2. 9 본회 회의실)

出席 강명구 회장, 김동규, 강봉진, 김진천, 이봉로, 한창진 (이사)

討議事項

1. 건축사법 개정안 심의
결의 - 차기 이사회(2월 25일)에서 건축사 업 무의 보수기준과 같이 심의하기로 결의 함.

2. 전북 공대교수 이중직 단속결의
결의 - 전북대학교 총장에게 사법에 위배될을 지적하고 차후 시정하도록 공문 발송할 것을 만장일치 함.
3. 문화재 관리국 노임단가 조희
결의 - 유인물로 만들어 차기이사회(2월25일)에서 심의하기로 결의 됨.
5. 송기덕 회원 윤리위원회 제소의 건
결의 - 서울시 지부에 이첩하여 조사하도록 하 고 의견을 첨부 보고토록 할것.
6. 회지 인쇄의 건
7. 직원문제
현재 총무를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실무경험이 많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 원 2 인을 총무가 추천하여 채용하도록 만장 일치로 결의 함.
8. 총회일자
3월중으로 결산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 함.
9. 감사직 사퇴의 건.
결의 - 감사직을 사퇴하고 집행부인 지부장이 선출되었으니 직권 사임된 것임.
10. 총무이사 위임의 건
김동규 총무이사가 월남으로 출국하여 4 개월 간 공석이니 김진천이사가 총무이사직을 위임 받음.

* 윤리규약 위반사건

1. 차경순 회원과 허균 회원간에 순복음 중앙교회 여의도 교회당 설계에 관한 윤리위원회 제소가 있어 서울시 지부에 이첩 조사중에 있음.
2. 송기덕 회원과 홍영기 회원과 고려제지 군산공장 신축공사 설계에 관한 윤리위원회 제소사건 이 있어 서울시 지부에 이첩 조사중에 있다.

☆ 소 식

(강명구 회장)

- 대한건축사 협회 강명구 회장은 개인자격으로 1970년도 서울시 문화상 심사위원으로 심사착수 하였음.
- 인천시 실내 체육관 현상설계 심사위원으로 1970. 3. 5 심사에 참석.

☆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책자 발행

FY 70, 건설부 발행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노임단 가 기준 책자를 본부 및 서울지부에서 배부하고 있음.